국립해양생물관 공고 제2026-0029호

2026년 제5차 직원(체험형 인턴(학예)) 채용 공고

국립해양생물관은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공감 확산 전시·교육 및 조사·연구 등 해양생물관 고유 업무를 수행할 학예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 절차에 따라 적격자 발굴 및 임용 결정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을 위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실시합니다.

2026년 6월 개관

국립해양생물관

국립해양생물관은 "깊게 탐험하는 바다, 넓게 이어 가는 해양 자료와 관련한 인식의 확대"를 표방하고 있으며, 해양 탐험 공간과, 해양 생물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 채용인원

구분	직무	담당예정업무	채용인원
체험형 인턴	박물관 학예업무지원	- 학술조사·연구조사 보물찾기 교육 등 업무 지원	4

02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근로형태	계약직 인턴 로 기술센터의 초청자는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2026.10.1.~2026.12.31.(3개월)
근무시간	주40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 도서관 근무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당 근무일 수 2일, 주당 근무 시 주중 휴 일 실시로 주5일 근무함
보수	- 2,160,000원/월(세전)
인센티브	학예업무인턴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국립해양생물관 신입직원 채용 시 가점 부여 (서류전형 합격자 가점) 우수 체험형 인턴으로 선정된 자에게 국립해양생물관 신입직원 채용 시 가점 부여 (서류전형 합격자 가점) - 근무기간 중 직업안정법 위반에 저촉에 들어올 경우 특별휴가 부여 - 근무기간 중 직업안정법 위반에 저촉에 들어올 경우 특별휴가 부여

03 응시자격

- 국립해양생물관[근로규칙」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차.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대표자·업무상 종사자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마약류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파.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수급자
   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너.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러.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허.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초.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포.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투.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즈.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크.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이용자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자격의 상실이나 변경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흐